도시계획관리위원회 제298회 정례회

공사 사업 범위에 관한

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(안) 보고

2020. 12. 18.



목 차

- I. 개정의 필요성
- Ⅱ. 주요 내용
- Ⅲ. 정관 개정(안)

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(안) 보고

Ⅰ 개정의 필요성

- 제297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(2020.09.15.)에서 의결된 「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(조례 제7756호, 2020.10.05.)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공사 정관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.
 -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(사업)제1항 제20호에 "주차장의 건설 및 관리·운영사업"을 신설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
 - 조례개정에 따라 정관 제6조(사업)제1항제20호 "주차장의 건설 및 관리·운영 사업" 신설

Ⅲ 주요 내용

- 공사 사업범위에 '주차장의 건설 및 관리·운영사업'을 추가
 - 공사 정관 제6조제1항제20호 신설

Ⅲ 서울주택도시공사 정관 개정(안)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사업)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수행한다. 1. ~ 19. 생략	제6조(사업)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 업을 수행한다. 1. ~ 19. (현행과 같음)
〈신 설〉	20. 주차장의 건설 및 관리·운영사업
<u>20.</u> 그 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	<u>21.</u> 그 밖에 도시개발과 관련이 있는 사업
	부 칙 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⊙ 서울주택도시공사정관 제65호

서울주택도시공사정관 중 개정안

서울주택도시공사정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1항제20호를 제21호로 하고, 같은 조 같은 항 제2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0. 주차장의 건설 및 관리·운영사업

부 칙

이 정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